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검 토 보 고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등 〉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34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6
1. 결의안의 배경 및 요지	6
2. 검토사항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17.
3. 회 부 일 : 2025. 11. 18.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최근 5만여 국민이 국회에 청원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과거와 달라진 대한민국 국민의 동물권과 생명존중의 보편적 가치가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현행 법령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의 일부 조항은 소싸움 경기를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여,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해를 유발하고, 심지어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자극행위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소싸움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소에게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일부 소는 경기 후 안락사되거나 방치되

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소싸움 지원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도군의 경우 영업손실액 66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동물의 고통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동물권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비윤리적인 폭력을 전통적 관행으로 유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혁하며,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소싸움 관련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며, 전통 문화 육성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동물의 감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50,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소싸움 전면 금지 청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며, 소싸움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관행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이러한 변화는 생명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소싸움은 반복적 충돌과 강제적 대치를 전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소는 심각한 통증, 스트레스, 외상, 공포를 경험함. 이는 「동물보호법」의 학대·고통 유발 금지 취지와 상충할 소지가 있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이를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법체계 내 모순을 초래하고 있음.

과학적 연구는 투우·격투 상황에 동원된 소들이 심각한 생리·대

사 이상과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다는 점을 보여줌(Mota-Rojas et al., Animals, 2021 등).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논의, 영국의 Animal Welfare Act 2006의 ‘불필요한 고통 (unnecessary suffering)’ 금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 위생규약기준 (7.1장)의 “pain, fear and distress” 회피 기준 등은 오락·전통을 이유로 한 동물의 고통 유발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음. 국내 법체계 역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함. 국제 기준과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정비되어야 함.

아울러 공공재정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 청도 소싸움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66억원의 영업손실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었고, 다수의 지자체가 소싸움 대회 운영·홍보·시설 유지에 예산을 사용함. 이러한 구조는 재정 건전성 및 공공성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오히려 관련 예산을 생태·교육·문화 기반의 대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더 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

소싸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동물의 방치 및 사후 처리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훈련·경기·운송·계류 단계 전반에서 구조·응급치료·재활·장기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추가 고통과 방치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이는 이

미 현행 「동물보호법」 제34조가 예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화하는 조치임.

또한 소싸움 금지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와 사육 농가의 단계적 전환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며, 생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소싸움 전면 금지는 동물복지의 기본 기준을 확립하고, 법적·행정적 모순을 해소하며,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중단과 예산 전환, 부상 동물 보호체계 확립, 종사자 전환 정책 마련을 통해 폭력적 오락 관행을 종식시키고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배경 및 요지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하는 것으로, 2002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매년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고 있음.

소싸움경기에서는 2024년 기준 304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금 및 제세금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4년 영업손실액 66억원은 지자체에서 지원함.

[최근 3년간 소싸움경기 매출액 및 이용객 현황]

구분	'22	'23	'24	'25(6.26.기준)
매출액 (억원)	296	271	304	113
영업이익 (억원)	△32	△58	△66	-
이용자수 (천명)	165	296	391	179
경기당 평균 매출 (천원)	23,641	24,126	24,839	23,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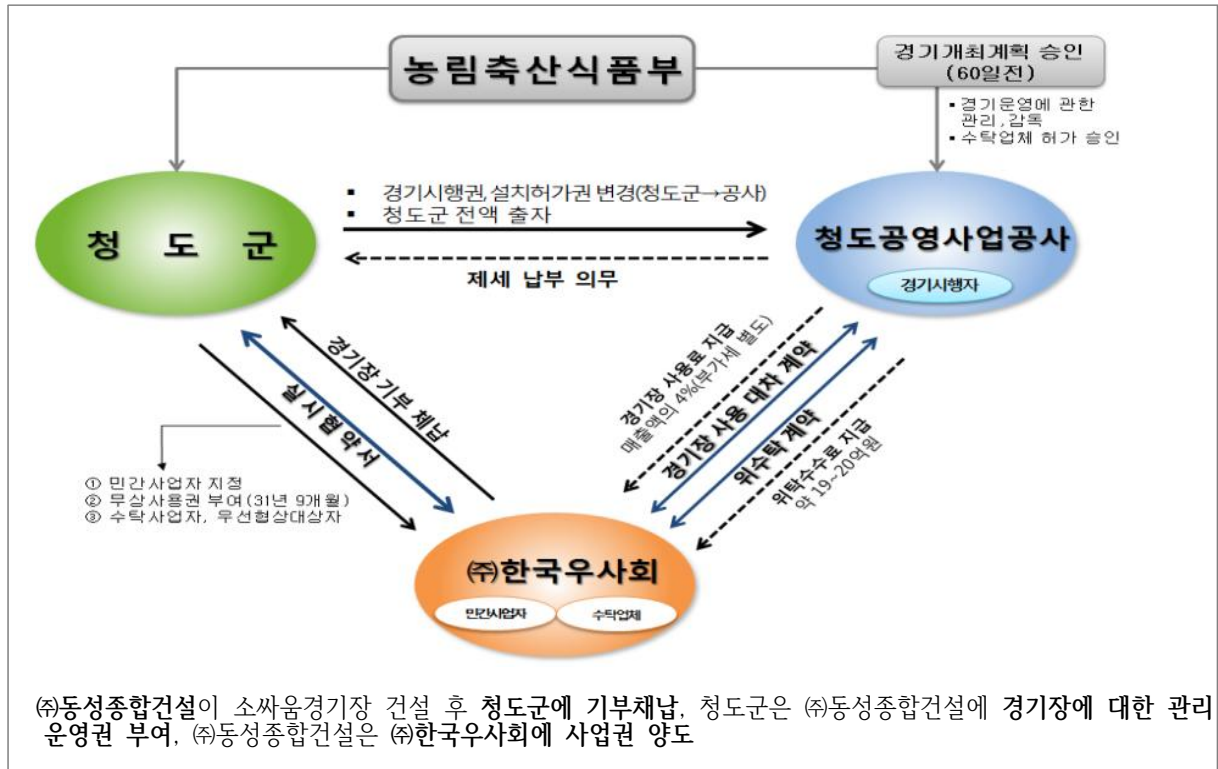
※주: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계획 대비 경기 감소: '23년 (9개 회차 / 193경기), '25년 (5개 회차 / 120경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싸움경기의 시행주체는 청도군에서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로서 경기 시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우권 발매 및 환급금 지급, 경기장 경비, 질서유지 업무 등은 '청도공영사업

공사'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한국우사회'에서 수행함.

[청도 소싸움경기 추진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사행산업으로서의 소싸움경기 외에도 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두고 지역 축제 기간 중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창녕군, 충북 보은군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하였음.

이와 같은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¹⁾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²⁾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단서³⁾에 따라 ‘동물학대(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그러나 소싸움이 반복적 충돌과 훈련 과정에서 싸움소에게 상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싸움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자극행위를 수반하는 등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러한 배경에서 본 결의안은 동물권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서 소싸움을 동물 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주문1)과,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3)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4)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상설경기와 민속대회를 중심으로, 2025.6.26.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소싸움 관련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며, 전통문화 육성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것(주문2), 그리고 ③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주문3)을 촉구하려는 것임.

참고로,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발의(‘25.11.21.)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25.11.24.)되어 있고, 「국회법」 제123조⁵⁾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으로서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소싸움의 법적 금지 및 조례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25.9.24.)되어 있음.

5)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사항

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등(주문1)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⁶⁾을 폐지하고,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결의함.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결의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이자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의안의 형식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둘째,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소싸움은 오랜 농경 생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로 전통문화 유지의 필요성, 싸움소 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동 법은 경북 청도군에서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소싸움놀이를 1995년 이후 연간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싸움 축제로 발전 시킴에 따라 이를 전통문화로서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의 하나로 진흥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⁷⁾

이에 따라 2025년 현재 청도 소싸움경기에는 싸움소 심판(25명), 조교사(21명),⁸⁾ 청도공영사업공사 직원(25명) 등이 종사하고 있으며, 25개 시·군에서 60개 싸움소 전업농가를 비롯하여 150개 농가에서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음.

[심판 및 조교사 등록 현황(2025.6.기준)]

구 분	심판						조교사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록인원	25	-	-	3	5	17	21
출전인원	19	-	-	3	4	12	12

[2025년 지역별 싸움소 및 농가 현황(2025.7. 기준)]

연번	광역시	지역명	싸움소 수	농가 수	전업농가 수
1	경상남도	고성군	2	1	-
2		김해시	63	15	11
3		밀양시	9	2	2
4		사천시	5	2	1
5		산청군	6	3	-
6		영천시	1	1	-

7)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02-02-08)

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가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연번	광역시	지역명	싸움소 수	농가 수	전업농가 수
7		의령군	78	15	7
8		진주시	7	5	3
9		창녕군	77	24	10
10		창원시	35	11	7
11		하동군	3	1	-
12		함안군	8	4	4
13		합천군	18	5	1
14	경상북도	고령군	28	7	1
15		김천시	8	1	-
16		성주군	6	1	1
17		청도군	261	33	10
18		청송군	5	1	-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18	7	-
20	대전광역시	대전시	1	1	1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1	1	-
22	전라북도	완주군	6	2	-
23		정읍시	7	1	-
24	충청북도	보은군	32	5	-
25		청주시	1	1	1
합계			686	150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법률의 전면적 폐지는 문화다양성 저해,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 붕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반면, 법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2025년 소싸움 폐지 여부에 대한 (사)동물해방물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권리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소싸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 지역 전통과 소싸움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나타남.

2025년 1월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종목 지정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⁹⁾ 소싸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책 과정에 반영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의안에 대해서는 소싸움을 전통문화로서 보존·지원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 동물권에 대한 최근의 인식 변화 및 그 보편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2025년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차 회의록

나.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폐지 및 재정지원 중단 등(주문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2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포함)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현황]

연번	지자체	제정일	조례명
1	경상남도	2022.7.7.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경상북도	2016.7.11.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남 김해시	2009.9.25.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4	대구 달성군	2009.5.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5	충북 보은군	2020.3.13.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6	경남 의령군	2008.9.1.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7	전북 정읍시	2008.4.4.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8	경남 진주시	2008.8.11.	진주시 민속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9	경남 창녕군	2008.11.25.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	경남 창원시	2010.7.1.	창원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 조례
11	경북 청도군	2008.11.21.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12	경남 함안군	2008.9.11.	함안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중 실제 대회는 2023년 7개, 2024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었으며, 소싸움대회에 대해 별도의 국비 지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2023년 지자체별 민속대회 및 싸움소 육성 지원금 현황]

지역	지원 항목	지원금액(원)
대구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150,000,000
	싸움소 육성	14,400,000
보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230,000,000
	민속소싸움대회출전장려지원	7,500,000
	싸움소 사료비 지원	9,999,990
의령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403,273,040
	민속소힘겨루기 소 육성 및 대회 개최	173,040,000
진주	전통민속소싸움대회	225,800,000
창녕	소힘겨루기 육성지원	240,039,874
	민속소힘겨루기대회지원	147,400,000
창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65,782,640
청도	소싸움대회 지원	600,000,000
합계		2,367,235,544

※자료: 동물해방물결

이에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소싸움 관련 모든 재정지원을 중단하며, 전통문화 육성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결의안은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소싸움대회의 개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촉구는 국가적 차원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에 대한 구조·지원(주문3)

결의안은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려는 것임.

싸움소의 싸움 과정에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치료 없이 경기가 지속되는 등 부상·방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¹⁰⁾

결의안은 이러한 우려에 따라 싸움소에 대한 적절한 보호·치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소싸움 제도의 존폐 여부와는 별도로 동물복지 증진과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요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경기시간 제한(30분 이내), 뿔끝 규격 제한(10mm 이상), 수의사 배치 등 각종 보호조치 하에 소싸움 경기가 시행되고 있으며,¹¹⁾ 현행 「동물보호법」 제34조¹²⁾에 의할 때에도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10) 사단법인 동물해방물결,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상설경기과 민속대회를 중심으로, 2025.6.26.

11) 2025년 하반기 청도소싸움경기 운영 계획 및 운영기준(청도공영사업공사)

12)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보호 및 격리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4